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399호

시행일자 2019. 12. 23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898호 (2019.12.02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0355호 (2019.12.3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82호(2019.12.23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 142호, 2019.6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 :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('19.7.4.)에 따른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(동시평가) 관련 내용 정비 등

나. 시행일 : 발령일('19.12.23)부터

다. 문의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(☎044-202-2737)

붙 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